

No. 32

## 행정 명령

### 특정 법 조항 유예기간의 지속

나는 2011년 8월 25일, 행정명령 제17호를 발표, Bronx, Kings, New York, Queens, Richmond, Nassau, Suffolk 카운티 및 뉴욕 주 인접 지역들에 대해 비상재해를 선언했다;

2011년 9월 15일, 아래 추가된 카운티들의 경계 내에 2011년 9월 12일 월요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주 비상재해를 선언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17호를 수정하고자 행정명령 제 22호를 발표했다. Albany, Broome, Chenango, Chemung, Clinton, Columbia, Delaware, Dutchess, Essex, Greene, Herkimer, Montgomery, Oneida, Orange, Otsego, Putnam, Rensselaer, Rockland, Saratoga, Schenectady, Schoharie, Sullivan, Tioga, Ulster, Warren, Washington 그리고 Westchester;

행정법 섹션 29-a 에서 법규, 지방법, 조례, 령, 규칙이나 규정 또는 그 중의 일부가 그러한 조항의 준수가 비상재해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지 또는 지연할 경우 이를 유예,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;

2011년 9월 15일, 그러한 법 조항들을 유예하여 주의 비상재해 때 손실된 주정부 발행 문서를 법에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체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 21호를 발표했다;

2011년 9월 15일, 농업 및 자연 자원 기반시설의 복구를 더 빠르게 하고 주의 비상재해의 영향을 입은 지역 농장들의 현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들을 유예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 22호를 발표했다;

행정법 섹션 29-a 에서 어떠한 법 조항도 그 유예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다, 단,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다시 고려해볼 때, 유예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;

2011년 10월 13일, 행정명령 제 21호와 22호에 의해 명령된 법의 유예를 2011년 11월 13일까지 지속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제 29호를 발표했다;

그러므로, 이제 뉴욕 주지사인 나, ANDREW M. CUOMO는, 행정법 2-B조 섹션 29-a에 의해 나에게 부여된 권능으로, 그리고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들을 재고해 본 후,

이에 행정명령 제 21호와 22호에 의해 명령된 법 조항들의 유예를 2011년 12월 13일까지 지속할 것을 명령하는 바이다.

이천일십일년 십일월 십일 알바니 시에서 자필로

작성하고 주의 인장으로 날인함

주지사

주지사 비서